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1. 의결주문

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개정이유

○ 「법원공무원규칙」의 개정으로 전문직위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전 문분야에 장기간 근무하는 공무원을 우대하기 위하여 전문직위수 당을 신설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전문직위 전문관으로 선발되어 전문직위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근무기간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문직위수당을 지급하도록 함(안 별표 9 제11호 신설)
 - 4급 이상 공무원 : 월 100,000원 내지 월 450,000원
 - 5급 이하 공무원 : 월 70,000원 내지 월 400,000원
- 4. 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불위과 같음

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

법관 및 법원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 9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구 분	지급대상	지급방법	지급액
11. 전문 직위수 당	「법원공무원규칙」제 51조의2에 따라 전문 직위 전문관으로 선발 되어 해당 전문직위에 서 전문업무를 담당하 는 공무원	범위 및 지급 액은 지급상한 액 범위에서	근무기간월 지급 상한액 4급 이상5급 이하1년 미만100,000원70,000원1년이상 2년미만120,000원90,000원2년이상 3년미만180,000원150,000원3년이상 4년미만300,000원250,000원4년 이상450,000원400,000원(비고)근무기간은전문직위전문직위에서근무한날부터계산한다

부 칙

이 규칙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의안 소관 부서명>

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조직심의관실			
연락처	(02) 3480 - 1932		